마포 뉴매드 오피스텔 분양광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분양홍보관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분양홍보관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분양홍보관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분양홍보관 방역에 관한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분양홍보관 관람,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불시에 분양홍보관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분양광고일(2022.11.25.) 기준입니다.

■ 본 오피스텔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군별 1건씩 청약 가능하며(최대 2건), 동일인이 군별 2건 이상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청약 신청 전부가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공급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자 및 매도자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한 오피스텔의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포 뉴매드 분양홍보관 내 분양 상담전화(☎1533-4003)등을 통해 분양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세 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당첨자 대상으로 정당계약 진행 시 필히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 세액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10억원 초과 - 350,000원

※ 가산세 : 최대 300% 부과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4 제9항, '21.1.1부터 적용)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1-건축과-분양신고-2호(2021.11.18.)로 기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 제7항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마포구고시 제2021-66호(2021.04.08.)]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95-1외 36필지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2,897.60㎡
- 건축물 연면적 : 38,392.63㎡ 중 2,630.71㎡
- 건축물 층별 용도 :

구 분	용 도
지하 7층 ~ 지하 4층	주차장(기계식 포함),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정화조, 우수조 등
지하 3층	피트니스, 수영장, 취미실, 조식라운지, 관리사무소 등
지하 2층 ~ 지상 2층	업무시설, 공공기여(창업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37실), 출입구, 로비 등
지상 3층 ~ 지상 20층	오피스텔(분양 254실, 임대 40실)

※ 각 층별 용도에는 기타 공용시설(복도, E/V, 주차램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공급규모 : 지하7층 ~ 지상20층 1개동, 분양 오피스텔 254실(보류지 3실 포함) 중 19실
- 주차대수 : 총 262대 [금회 공급하지 않는 임대오피스텔, 공공기여(창업지원)시설, 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전체건물의 주차대수 규모임]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마포로 1구역),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 환경보호구역 : 해당 없음
- 지구단위계획수립 여부 : 해당 없음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 성능이 확보 되었으며, 동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계수(I_E)	내진설계범주	건물 중요도
0.176	S3	1.2	C	I

- 본 건출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건축물의 구조 기준등에관한 규칙」에 따라 메르칼리 진도(MMI) 등급 Ⅶ이며, 최대지반가속도는 0.218(g)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5년 3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용도별로 입주예정일이 다를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오피스텔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단위 : 실, ㎡)

군별	타입	공급호실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포함)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1군	G	2	45.62	20.71	66.33	31.44	97.77	7.38
2군	D	13	65.05	28.77	93.82	44.82	138.64	10.46
	E	3	75.98	33.24	109.22	52.35	161.57	12.19
	J	1	69.62	30.55	100.17	47.97	148.14	11.18

※ 상기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2자리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오피스텔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실, 원)

군	타입	공급호실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시
										2022. 6.15	2023.1.15	2023. 8.15	2024. 2.15	2024. 6.15	2024.10.15	
1군	G	2	최저가	626,000,000	409,000,000	40,900,000	1,075,900,000	50,000,000	57,590,000	107,590,000	107,590,000	107,590,000	107,590,000	107,590,000	107,590,000	322,770,000
			최고가	653,000,000	426,000,000	42,600,000	1,121,600,000	50,000,000	62,160,000	112,160,000	112,160,000	112,160,000	112,160,000	112,160,000	112,160,000	336,480,000
2군	D	13	최저가	871,000,000	569,000,000	56,900,000	1,496,900,000	50,000,000	99,690,000	149,690,000	149,690,000	149,690,000	149,690,000	149,690,000	149,690,000	449,070,000
			최고가	987,000,000	644,000,000	64,400,000	1,695,400,000	50,000,000	119,540,000	169,540,000	169,540,000	169,540,000	169,540,000	169,540,000	169,540,000	508,620,000
	E	3	최저가	941,000,000	614,000,000	61,400,000	1,616,400,000	50,000,000	111,640,000	161,640,000	161,640,000	161,640,000	161,640,000	161,640,000	161,640,000	484,920,000
			최고가	1,048,000,000	684,000,000	68,400,000	1,800,400,000	50,000,000	130,040,000	180,040,000	180,040,000	180,040,000	180,040,000	180,040,000	180,040,000	540,120,000
	J	1	최저가	927,000,000	605,000,000	60,500,000	1,592,500,000	50,000,000	109,250,000	159,250,000	159,250,000	159,250,000	159,250,000	159,250,000	159,250,000	477,750,000
			최고가	927,000,000	605,000,000	60,500,000	1,592,500,000	50,000,000	109,250,000	159,250,000	159,250,000	159,250,000	159,250,000	159,250,000	159,250,000	477,750,000

■ 공통사항

- 본 오피스텔 금번 공급물량은 총 254실(보류지 3실 포함) 중 19실이며 4개 타입이 공급대상입니다. 상세한 공급내용은 청약 신청 전 홈페이지와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신축건물은 상기 공급대상 물건을 포함하여 임대 오피스텔(40호실), 창업지원시설, 업무시설(오피스) 용도 및 부수되는 공용면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공급금액은 타입별 면적, 층, 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청약 신청 시 분양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기 공급금액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일부 호실에 테라스가 있으며 테라스는 분양면적 또는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면적입니다.
-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제3호 기준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 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전용면적은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실별 설계도서는 마포 뉴매드 분양홍보관 내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시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오피스텔(임대포함) 설치주차대수 238대분의 면적, 근린생활시설 설치 주차대수 12대분의 면적, 공공기여(창업지원)시설 설치 주차대수 4대분의 면적, 업무시설 8대분의 면적]은 각 설치 주차대수 면적을 각 용도별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공기여(창업지원)시설, 업무시설]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하였습니다.
- 전체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체공용면적(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관리사무실 등)은 각 시설별 전유면적(전용면적, 층별공용면적, 벽체공용면적, 부대시설면적)의 합계 비율에 따라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공공기여(창업지원)시설, 업무시설의 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호실 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청약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분양홍보관(T.1533-4003)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지분은 분양 당시 전체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각 용도별[오피스텔(임대포함),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공기여(창업지원)시설] 계약면적 합계 비율로 균등 배분한 것을 각 호실별 계약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하여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단, 단수정리를 위한 오차는 일부 호실에 할애 하였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 공정이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 된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체결 시 1차계약금,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차계약금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계약금 중 일부금(1차분 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자는 잔여 계약금의 미납을 근거로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은 공급가의 60% 범위 내, 근린생활시설은 공급가의 4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 신청자와 본인이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고, 대출을 받으신 경우라도 대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금 금액은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계법령, 정부정책 또는 금융기관 대출 방침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제한 되거나 대출비율이 축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가 시행위탁자 등 사업관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일(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1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가 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 위기상황 발생 및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집단대출 알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자기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 조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중도금 무이자조건으로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함), 시행위탁자의 대출이자 대납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이고, 중도금 대출로 인해 발생한 이자금액을 입주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 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연체료 부과)

■ 청약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 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그리고 정부정책 및 해당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합니다.
- 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시 별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할 필요 없음.)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Ⅱ 청약신청 자격 및 공급 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한 인터넷 청약을 통해 접수 받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분양광고일(2022.11.25.)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각 군별 1인 1건(최대 2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군별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가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시	2022년 11월30일(수)~ 12월01일(목)	2022년 12월 07일(수) 16:00 이후	2022년 12월 08일(목) (10:00~17:00 까지)
방법	인터넷 청약(09:00~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청약 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개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계약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마포뉴매드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518)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수협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안내**

구분	구비서류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청약신청→'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청약신청하기 ② 청약:인증서로그인→ 주택명 및 군선택→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 완료 → 신청내역 조회 ※스마트폰앱으로도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군 공통	₩ 3,000,000 (금삼백만원)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 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 창구 접수시 구비서류 (수협은행 전 지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공급</td><td>본인 신청시</td><td colspan="2">• 청약 신청서(수협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 신청금
• 청약 신청금 환불받을 통장사본(청약 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재외동포 :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 colspan="2">-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td></tr>
<tr><td colspan="2">법인 신청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수협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1통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부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td></tr>
</table>

※ 창구접수는 대행은행인 수협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견본주택에서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로 처리되니 신청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동일 타입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제출서류는 분양광고일(2022.11.25.)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
(단, 청약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별 호실을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2년 12월 07일 수요일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추첨 및 안내 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별 타입·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한국부동산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청약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인터넷 청약 후 낙첨된 청약자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공급 단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분	환불방법
환불 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 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 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은 은행 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이후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청약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관계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환불신청 계좌오류 등 송금불능사유 발생 시 환불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2년 12월 08일 목요일	10:00 ~ 17:00	마포 뉴매드 분양홍보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518)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계약금 납부 :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호수 및 수 분양자 성명 기재)하여야 유효하며,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도 동일 계좌로 입금)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납부(무통장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용도별	분양대금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오피스텔	1・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산은행	113-2015-5645-08	(주)하나자산신탁 이창희	입금 시 층,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10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1차 및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관계자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금 납부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분양홍보관"에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분양홍보관" 현장수납불가)
(입금예시 : 3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은 '301홍길동'으로 기재하여야 함.)
• 예금주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관리신탁 계약에 의한 자산관리사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 따라 분양수입금을 관리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관계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나 계약 잔금을 완납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①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②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③ 주민등록등본 1통(서울시 거주 우선 배정 신청자는 거주개시일 표시) ④ 계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1통(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법인 계약 시	①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②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③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④ 법인 등기부등본 1통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⑤ 법인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제3자 대리 계약 시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①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②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분양홍보관에 양식 비치)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도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분양광고일(2022.11.25.)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행수탁자 등 사업관계자가 수의계약을 통하여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해지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체결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취소, 고발조치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신분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 주변 및 인접부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소음, 진동 등),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업무시설(오피스텔), 업무시설(오피스), 공공기여(창업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분양홍보관"에서 평면도, 배치도 등 해당 도면의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업무시설(오피스), 공공기여(창업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입주 및 입점시기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중도금 대출기관은 시행위탁자가 선정하며, 계약자는 금리 및 금융기관 선정 등 대출기관 선정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금액 : 대출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은 계약금을 완납한 계약자에 한하여, 중도금대출이 가능할 경우 오피스텔은 총 분양가격의 60%, 근린생활시설은 총 분양가격의 40% 범위 내 대출을 시행위탁자가 알선합니다.(단, 관계법령, 정부정책 또는 금융기관 대출방침에 따라 제한(축소)될 수 있으며 대출제한(축소)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 등 사업관계자에게 계약해제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은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연체료 부과)
- 본 건물 오피스텔 계약자에 대하여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중도금 이자를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가 대납된 대출이자 해당액 전액을 잔금 지급시 시행위탁자 등 사업관계자에게 지급)를 적용하며, 근린생활시설 계약자에 대하여는 중도금무이자(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중도금이자를 시행위탁자가 대납)가 적용되오니 주지하시기 바라며, 관련사항은 계약 체결전에 분양홍보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세부일정 및 내용은 분양홍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 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변경, 국제금융 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분양 대금을 계약자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 법인인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시행위탁자 등 사업관계자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시행위탁자 등 사업관계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거나, 입주지정기간 전에 대출받은 중도금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시행위탁자에게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그 금액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대출 금융기관 선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추후 안내(알선)하는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위탁자와 대출가능 금융기관 간 대출업무협약이 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대출제한 및 금리상승 등)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대출한도초과, 중복초과 등) 등으로 대출조건 및 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며,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조건(금융기관, 금리 등)에 이의가 있는 계약자는 분양가격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자의 책임으로 조달하여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확인하고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수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 본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IV 기타 계약자 안내

■ 오피스텔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사업으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근거하여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함)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제한기간은 분양계약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단, 사용승인 후 1년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승인 후 1년까지)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사, 형사, 세법 기타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권 전매 및 권리양도 제한사항

• 본 근린생활시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관련법령 등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는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4에 따라 계약이 취소 될 수 있고, 동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가능하며, 당사에 대한 채무이행 및 당사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기타 분양권 전매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추후 법개정에 따라서 전매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25년 3월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지정일 전에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출토,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오피스텔에 한함) 사전방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제10의2호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지는 우편으로 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방법
오피스텔 계약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호에 의거 사용승인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기간 개시일전에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V 기타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면적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2째 자리 이하 단수조정(반올림)으로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반올림 또는 버림에 따른 오차는 임의의 호실에 반영하였으며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당 사업부지는 마포로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변경, 각종평가(교통영향평가, 친환경인증, B.F. 등)변경 등에 따라 사업계획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축물은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에 소재하며 업무시설(오피스텔), 업무시설(오피스), 공공기여(창업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합건축물로서, 부설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소재하며 인허가(교통영향평가)사항에 따라 주차장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각 용도별 주차장 면적은 법정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계약면적에 포함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광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분양홍보관은 승인된 건축허가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총 대지지분을 타입별 계약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호실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분양홍보관에는 49A, 65D, 79I 타입 등 3개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호실 CG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분양홍보관 설치 타입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조경 패턴 및 식재, 시설물 디자인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입면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 설계 시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및 분양홍보관에 전시된 모형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현장 현황, 분양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별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관 및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 할 경우 분양홍보관을 우선으로 합니다.)
- PD, EPS, TPS실 등 내측면에는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분양홍보관 및 각종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전시용조명, 커튼, 전시용가구 및 가전, 소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며,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입면디자인(저층~고층 구간 석재 및 도장디자인 포함), 팬룸, DA, 외부난간, 조경, 색채, 몰딩, 창호, 유리컬러,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옥탑장식물, 실외기(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설치위치 및 디자인, 외부로고사인, 외벽마감, 바닥포장, 필로티, 상가간판,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마감사양, 동선체계 관련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홍보관을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입내부 및 본 건물의 내·외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분양안내문, 공급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에 시공 된 창호, 현관 방화문 도어, 슬라이딩 도어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창짝순서), 형태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표현된 점검구 위치 및 크기 수량은 본 공사 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시행자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오피스텔(부대시설 포함) 등의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 및 별도 분양안내문, 분양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에 포함 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건물의 입면에 적용된 각종 마감재의 재료, 재질, 색상, 색채에 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으며, 설계 및 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광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분양홍보관,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시행자,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 관련심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호실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광고 등에 제시된 조감도, 호실 평면도 등 설계관련 도서 및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 계획(변경)승인 또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합니다.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호실이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계약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분양홍보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시 설계도서와 분양홍보관 단지모형 상 외벽 색채, 옥상 조형물 등은 안전사고 방지, 성능개선,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허가를 진행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테라스, 복층(다락방) 등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각 호실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주차는 지하 4층에서 지하 7층까지 통합 계획하였으며, 인허가 사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용도별 주차대수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므로 주차대수 추가, 용도별 주차대수 변경, 차단기 추가, 택배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입(지하1층이하 불가) 등 인·허가 사항 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호실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입니다.
-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은 지하1층~지상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써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변도로로 인해 소음, 분진, 야간 및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여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후에도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부지 외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주체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당 사업지의 사업 범위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오피스텔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공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제 시공시 자재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공개공지는 입주민 뿐 아니라 인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하였으니 해당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시설물은 인허가 과정 또는 동선/성능 개선 등을 위해 실제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등),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3층 주민공동시설 등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옥상 구간에 배기휀 및 태양광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냄새 및 진동, 유지관리를 위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등의 편의증진 또는 동선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미 건립된 타입의 마감재 타입은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유사 타입과 상이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 욕실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옥외시설물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호실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한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시행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 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공사가 안내하는 호실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공동장소인 공개공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경관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호실과 타호실간 또는 단지 외 인접한 건물들로 인한 조망 등의 간섭이 층별 호실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명칭은 '마포 뉴매드' 이며,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가길 14 일대에 소재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본 건축물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폐기물,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의 신축 또는 건축법 등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 각종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공원·기반시설(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등)은 해당기관의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 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을"은 추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는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함. 관리규약의 변경, 폐지 또는 재설정은 입주 이후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의견에 따릅니다.
- 일부 동호실의 경우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난방은 개별 보일러를 이용한 바닥난방이 제공됩니다. 개별보일러 사용에 따라 온수 및 난방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 및 난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냉난방을 위한 장비(설비)가 복도 등에 설치되며, 하부층에는 장비에 의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해 소음, 진동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는 입점자에게 있습니다. 가스정압기로 인해 시각적 간섭 및 공간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환기를 위한 환기장비가 오피스텔 천정 내 설치되며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세대 환기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필터가 제공되며 연1~2회 교체를 권장드립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또는 복층(다락방)에는 상부세대 배관 유지보수/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개소는 분양홍보관 대비하여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설치된 각 종 마감기구류(수전, 도기, 악세서리 등)의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합니다.
- 각 호실별 현관 상부벽체에는 피난유도표지판(탈부착식)이 관련 소방법에 의해 설치됩니다.
- 단위호실의 온수분배기, 통신함, 분전함은 호실 내 씽크장 하부, 신발장, 내부벽체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은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S(통신실)는 매 층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법적시설로서 그 위치 및 면적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러형 타입의 경우 통신단자함, 전기분전함, 월패드 등 전기기구의 위치가 세대간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가스배관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스쿡탑 사용이 제한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내 마감 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장과 가구 설치내용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가 아닌 침실벽 등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며 분전 반의 형태, 규격, 사양, 디자인 등은 실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침, 이동통신용 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오피스텔은 총 294실로서 분양 254실, 임대 40실로 구성되어 있고 금회 공급대상은 분양 254실중 19실이며 제외되는 3개 호실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른 보류지입니다.

■ 설계 등 유의사항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유니트 외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CG와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유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은 분양이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한 뒤 회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의 연출용 시공 부분은 연출된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건축(변경) 허가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시행위탁자 등 사업관계자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관”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호실중 일부세대는 분양홍보관 내 설치된 단위세대 천정고(층고)보다 낮은 호실이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설계도면 등에 따라 천정고(층고)를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내 단위세대에 포함(설치)된 테라스는 일부 호실의 경우에는 시공되지 않으며, 단위세대 D 타입에 설치된 테라스는 D 타입 전세대에 시공되지 않으므로 설계도면 등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내 단위세대에 포함(설치)된 복층(다락방)부분의 건축법상 층고는 1.5미터 이하로 시공되며 실제 천정고는 건축법상 층고보다 낮으므로 설계도면 등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내 단위세대에 포함(설치)된 테라스 및 복층부분 면적은 타입별, 층별로 상이하므로 설계도면 등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테라스 및 복층(다락방)부분의 시공은 전시용 또는 연출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설계도면 등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내 단위세대에 설치된 조명기구 중 간접조명은 전시용으로서 실제 시공 시 시공되지 않으므로 설계도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내 I 타입 단위세대에 설치된 냉장고는 투도어 냉장고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주방가구 배치가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본건물 지하3층에 설치된 휘트니스, 조식라운지 등 시설은 건물관리회사와 별도의 관리운영업체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용도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내 설치된 전동커튼시스템,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 전시조명등은 “분양홍보관” 연출을 위한 전시품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 등에 따라 동일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시공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호실 분전반은 타입, 형태 및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유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전열교환기, 환풍기, 환기스위치, 디퓨져, 드레인, 선홈통 등의 타입, 형태 및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유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은 소방법에 따른 “분양홍보관” 설치 기준이며, 본공사 시 관련법령에 따라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됩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천장형에어컨은 설치위치는 각타입 호실별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미건립 호실의 경우, 전시실과 가구 및 인테리어 제품의 구성, 액세서리 유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설계도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견본 호실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분양홍보관”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분양홍보관” 실 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문틀이 미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 시 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레벨 및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등 사업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은 같은 타입이더라도 면적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며, 좌우 대칭형 평면 타입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의 마감사양은 타입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상세 사항은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의 크기는 마감, 단열재의 두께 등의 차이로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으며,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내경 치수에는 천장 몰딩이나 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 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구조상 동일한 타입이더라도 호실별로 조망 및 일조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마주보는 호실은 내부 노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북측 일부호실은 인근 건물에 의해 채광, 조망 등이 간섭될 수 있으며, 인근 건물의 외벽 재질 및 조명에 따라 눈부심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창호의 제조사, 형태 및 크기, 디자인, 사양, 설치 위치 및 개폐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외장재의 종류 및 설치 디테일에 따라 창호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에 의해 층별, 실별, 위치별 창호 사양(유리두께, 창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난간의 높이 및 디자인,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구조상 유리난간이 설치되므로 국기봉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호실의 외창에는 방충망이 설치되며,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크기,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색상, 하드웨어 등) 및 창호 주변 벽체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현관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결로 등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위해 재질 및 두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 현관문의 경우 엘리베이터 홀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에 설치되는 마감자재(가구, 석재, 인조석, 목재, 타일, 도배지, 걸레받이, 몰딩 등)는 각 자재의 특성상 색상, 무늬, 재질 및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분양홍보관"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재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따릅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 질감의 공급이 어려우며, 자연적인 무늬로 인하여 갈라짐, 옹이, 흠집, 결, 무늬, 이색, 철분에 의한 변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원목바닥재 선택시 자재의 특성상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에 취약하며,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일 및 천연석 자재의 나누기와 줄눈의 재질 및 색상은 디자인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하여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석재 자재(천연석, 인조석 등)는 자재의 특성상 나누기 줄눈이 생기며,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가구, 시스템 선반 및 벽·바닥의 마감 등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분양홍보관"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의 싱크, 수전 및 각종 빌트인 가전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후드용 덕트가 지나가는 일부 공간은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가구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벽, 천장, 바닥)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의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가구의 하드웨어(힌지, 레일 등) 및 액세서리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내부 및 호실간 벽체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 설치를 위한 일부 경량벽체는 시공 여건에 따라 일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대부분의 벽체가 경량벽체로 설치되며,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및 조적벽)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를 위해 골조 일부가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치 및 전기배관 등 시공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 몰딩의 재질 및 형태, 천장 마감 사양 등은 시공성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일부 구간에 픽쳐레일 몰딩이 설치되며, 픽쳐레일의 형태 및 색상,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고 액자걸이 및 와이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단차 및 기울기가 "분양홍보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의 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욕실문 개폐 시 욕실화가 걸릴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기기 및 액세서리류는 본공사 시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전열교환기 유지관리를 위해 각 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구의 디자인, 형태, 재질, 위치 및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 호실의 테라스공간, 옥외 조경구간, 옥상정원 등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며 재질,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천장 및 가구 내부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천장 내부에 상부 호실 배관이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 장치(콘센트/스위치)는 인허가 사항에 따라 적정 비율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 통신단자함 및 호실 분전반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가구 및 선반의 구성 및 설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커버 돌출로 인해 가구 내부의 수납공간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수도계량기함은 복도 또는 세대 붙박이장 하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호실 분전반 등)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계약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관련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건축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지정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고, 입점 시 및 입점후의 업종 중복에 대해서는 계약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등 사업관계자에게 일체의 책임 및 중재행위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층별로 층고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고 반드시 설계도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본 건물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관리회사가 입주 이후 1년간 근린생활시설 등 본 건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을" 또는 입주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의결에 따라 관리회사를 유지 또는 교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단, 입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을" 또는 입주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등이 결성되지 못하여 관리회사의 교체 또는 유지에 대하여 의결이 불가능 한 경우 "병"이 지정한 관리회사가 관리단 등이 결성되고 의결이 가능한 시점까지 본 근린생활시설의 관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
- "을"은 근린생활시설등 본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행위탁자가 상기 관리회사와 준공 이전에 체결하는 관리제공 관련 계약(관리계약)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하고 승계하여야 하고, 시행위탁자가 체결한 관리계약에 따

라 입주 후 상기 관리회사가 관리 및 시설관리를 수행 하기로 하며 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리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상기 관리회사가 근린생활시설 등 본 건물의 관리 및 시설관리를 하는 내용으로, 시행위탁자에게 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시행위탁자는 관리계약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입주(점)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약자(입점자)는 지하3층에 설치된 조식라운지, 휘트니스 등의 시설은 오피스텔 입주자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배분되었으므로 이용이 불가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시 모형 및 분양 유인물 등에 표현된 근린생활시설의 명칭 및 호수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 계약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수인하고 계약자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옥상휴게공간은 설계 및 인허가시 오피스텔 전용구간으로 오피스텔 계약자(또는 입주자)에 한하여 이용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시행위탁자 등 사업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광고물 (간판) 설치 시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재재발구역 정비계획, 서울특별시 및 마포구청의 기준[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등 관련법규,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 내용, 사업시행인가 내용, 근린생활시설 관리규약 등에 따라 담당 관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급된 실운영에 관한 사항일체 (실관리, 영업 인·허가 및 용도변경 등)와 인·허가에 따른 시설 추가사항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각 실의 시설기준은 준공인가 받은 상태대로 공급하며 입점 업체의 특성에 따른 내장재변경과 진열대, 간판 및 추가 설치되는 공사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 기타 본 근린생활시설의 옵션 혹은 선택항목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분양홍보관에서 세부 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약1~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영업 관련 인허가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구조변경 및 증·개축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며, 필요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관할지자체에 사전허가 또는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여야 합니다.
- 공급된 실운영에 관한 사항일체(실관리, 영업 인·허가 및 용도변경 등)와 인·허가에 따른 시설 추가사항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며 사업주체 변경 시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리상 필요시 타 시설의 계약자 및 이용자가 근린생활시설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일부 호실은 계약 여건에 따라 분리 또는 합병되어 전체 호실수가 증감될 수 있으며, 호실 분리 및 통합을 고려할 시 호실 간벽의 경량벽체 여부, 호실내부 기둥위치 등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일부호실 전면 외부에 돌출기둥, 계단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사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배기용 휀 및 탈취유닛은 옥상에 설치되어지며, 공용복도까지 주방배기 덕트 제공. 필요시, 실별 주방배기 덕트는 수분양자가 별도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지열냉난방기(일부), EHP(일부) 및 전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었고, 호실 간 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소음, 충격,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 내부는 기본 마감(천정-흡음텍스, 바닥-비닐타일계 마감, 벽-석고보드)으로 시공되며, 이후 마감관련공사는 계약자 부담입니다.
- 각 호실별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바닥 및 천정고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별로 급수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등이 노출되어 복도까지만 설치되며, 이후 공사는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연결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도시가스 사용을 위해서는 입점 후 계약자 부담으로 지역가스공급자에게 가스공급 신청 후 사용해야하며,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 등, 제반시설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 후 설치해야 합니다.
- 환기를 필요로 하는 식당 입점시 주방용 송풍기 및 덕트, 배관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합니다.(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을 시 탈취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호실 통합 시에 소방법(다중이용업소등) 및 관계법령 등에 해당될 경우 또는 냉방용량부족 발생 등에 따른 냉매배관 추가시공, 드레인 배관 추가시공 공사는 계약자 공사분으로 설치해야 하며,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전기, 공용부분의 상하수도, 경관조명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및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될 예정입니다.
-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호실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각 근린생활시설 창호류의 형태 및 개폐 방향 및 가구의 배치 등은 건축허가 도서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설비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비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호실에 따라 내외부 창호, 호실별 구성, 형태, 기둥의 유무 및 크기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호실 앞 공용시설(위치 변경이 불가한 조경, 소화전, 소화전함 등 소화시설)이 설치될 수 있음으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에 따라 일부 호실에 급배수, 가스공급, 환기/배기 시설 설치 등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호실의 경우 벽체 및 문(호실 출입구)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부 벽체는 대부분 경량칸막이 벽체로 시공되어지며, 이에 따라 경량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부 호실의 경우 내부 벽체에 기둥이 포함될 수 있음.
• 계약자에 의해 근린생활시설 벽체 철거/변경 시 벽체에 설치된 기구, 배관, 배선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공사해야 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VAT별도)	비 고
건축	지엔아이종합건축사사무소 (주)	₩750,000,000	
전기, 통신, 소방	(주) 세종기술단	₩970,000,000	

■ 사업주체 현황

구 분		사업관계자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상 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시행위탁자	상 호	한토플러스 주식회사
	주 소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29번길 6-6, 6층 601호(풍덕천동, 성하빌딩)
	법인등록번호	120111-1000132
시공사	상 호	범양건영 주식회사
	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14, 105동 비102호, 비104호(초량동, 범양레우스 센트럴베이)
	법인등록번호	110111-0015861
분양대행사	상 호	주식회사 솔렉스마케팅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9(자양동, Y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2973710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자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080007
- 사업방식 : 관리형 토지신탁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목·용도·규모
 ①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95-1외 35필지
 ② 지목 : 대

③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④ 규모 : 지하 7층 ~ 지상 최고 20층 (오피스텔 지상 3층 ~ 지상 20층 /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 지상 2층)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 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등기
- 시공업체의 명칭과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의 명칭 : 분양광고 참조
- 공급대금의 관리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명칭 및 등록사업자와의 관계 : 분양광고 참조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탁회사의 명칭 : 분양광고 참조



(현장)



(분양홍보관)

- **분양홍보관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518
- **분양 홈페이지** : https://newmad.co.kr/
- **분양문의** : ☎ 1533-4003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홍보관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와 분양계약서 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